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정이유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 및 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용 등을 통해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21.10.19)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법령 위반 시 모금 제한 기간을 구체적 규정(안 제2조)

- 1) 누구든지 업무·고용관계 등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기부금을 강요하거나 적극 권유·독려 시, 1~8개월의 모금이 제한됨
- 2) 공무원이 직원에게 기부금을 강요하거나 적극 권유·독려 시에는 1~8개월의 모금이 제한됨
- 3) 기부금 홍보 방법 위반 시에는 1~6개월의 모금이 제한됨

나. 기부금의 모금이 가능한 광고매체의 유형을 정함(안 제3조, 제4조)

- 1) 정보통신망, 신문 및 인터넷 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옥외 광고물, 인쇄물 등 가능한 광고매체를 세부적으로 규정함
- 2)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을 모금할 수 없는 방법에 지방자치단체

와 계약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권유·독려,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의 참여자에 대한 기부의 권유·독려 등을 추가함

3) 기부금 모금 시 광고매체에 제공해야 할 내용을 규정함

다. 고향사랑 기부금 접수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1) 기부자는 기부금을 기부 시 기탁서를 작성하고 접수기관은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을 접수 후 접수 대장에 기재하여야 함

라. 답례품 제공은 개인당 기부 총액의 30% 이내로 함(안 제6조~제8조)

1) 지방자치단체는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답례품 공급업체는 공모를 통해 선정함

2) 답례품 금지 품목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밖에서 통용되는 전자화폐·선불전자지급수단·직불전자지급수단과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의 입장권 등을 추가함

마.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모금 ‘충당 비용’의 사용(안 제9조)

1)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하고, 기금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야 함

2)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액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모금 충당비용을 사용하되 구체적인 비율은 별표로 정함

바. 기타 사항

- 1)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안 제10조)
- 2) 지방자치단체는 전년도 모금내용을 2월 말까지 홈페이지 공개하여야 함(안 제11조)
- 3) 지방자치단체는 모금 제한 기간에 해당하는 위반사실을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함(안 제12조)
- 4) 지방자치단체, 지정 금융기관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개인정보 처리(주민·외국인등록번호)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

4. 주요 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2022. 5. 6. ~ 6. 1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모금 제한 기간)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모금·접수 제한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고향사랑 기부금의 광고매체) ① 법 제7조제1항의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및 그 밖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전자적 전송매체
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3.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4.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
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옥외광고물
6.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인쇄물

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영화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

8. 그 밖에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매체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방법

② 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광고매체를 비치 또는 설치하여 광고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와 계약관계에 있거나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 대한 개별적인 권유·독려

2.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에 참여한 사람에 대한 적극적인 권유·독려

3. 그 밖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자발적 제공 또는 건전한 기부문화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행위

제4조(모금의 방법·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광고매체를 통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2. 기금사업의 내용

3. 고향사랑 기부금의 납부절차

4. 답례품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광고매체를 이용한 모금을 추진할 경우에는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라 광고 계획의 수립, 광고 의뢰, 홍보 매체의 선정 등의 절차에 따른다.

제5조(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①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전자문서로 된 기탁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행정정보 공개시스템의 확인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본인 여부
2. 주소지 확인을 통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여부
3. 기부하려는 금액 및 해당 연도에 이미 납부한 기부금액
4. 답례품에 관한 사항(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를 받은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를 제출한 자에게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납부 절차를 알려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고향사랑 기부금 접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가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증명서를 발급·요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영수증(전자문서로 된 영수증을

포함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기부자가 직접 정보시스템을 통해 납부할 경우에는 기부자가 출력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납부를 대행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6조(답례품의 한도)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해당연도 개인별 기부 금액 총액의 100분의 30이내를 말한다. 이 경우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의 가액의 산정은 기부자가 기부하는 당시의 취득 시가(時價)에 따른다.

제7조(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 등) ①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답례품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으로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답례품(법 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포함한다.)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3. 답례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자문에 관한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에 선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답례품의 제공을 위하여 공급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공모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선정된 답례품 공급업체에 대한 정보의 관리·운영 및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방식과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8조(답례품 금지 품목) 법 제9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화폐·선불전자지급수단·직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의 입장권
3. 전기·전자기기, 골프용품 등 자산성이 높은 물품
4.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해를 끼치는 등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제9조(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용) ①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은 별표 2와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답례품에 대한 비용을 지출할 경우에는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공급업체에게 답례품 비용을 고향사랑기금에서 신속하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에 따라 별도의 예산(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모집

및 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다.)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고향사랑 기금을 관리·운용하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금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

④ 그 밖에 고향사랑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0조(정보시스템 운영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자정부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8조에 따른 기부금의 모금·접수에 관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법 제9조 및 이 영 제7조에 따른 답례품 및 공급업체에 관한 정보시스템의 관리·운영 및 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모금에 관한 정보 및 기금사업에 관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게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매년 9월 말일까지 다음 연도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운영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제11조(결과 공개의무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전

자적인 방법으로 관리한다. 이 경우 일반인이 열람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 및 제5호의 서식에 따라 그 자료를 상시 제공해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고향사랑 기부금 홍보 지출부
2. 별지 제5호서식의 고향사랑기금 지출부
3. 별지 제6호서식의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사용명세보고서

② 지방자치단체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전년도의 내용을 당해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전년도의 고향사랑 기부 접수 및 금액
2. 전년도의 고향사랑기금 사업의 사용 내역
3. 전년도의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에 충당한 비용
4. 전년도의 답례품 제공 내역 및 소요 금액

제12조(위반사실 공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가 제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고, 해당 제한기간 동안 정보시스템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3. 위반 종류

4. 위반 내용

5. 처분 기간 및 처분 내용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게시 외에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 등에 추가로 공표할 수 있다.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접수할 경우 시행령 제5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융기관 및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모금·접수 기간의 제한 기준

[별표2] 모집·운용 등 필요비용에 총당할 수 있는 비율

[별지 제1호서식]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

[별지 제2호서식] 고향사랑 기부금 영수증

[별지 제3호서식] 고향사랑 기부금 접수대장

[별지 제4호서식] 고향사랑 기부금 홍보 지출부

[별지 제5호서식] 고향사랑기금 지출부

[별지 제6호서식]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사용명세보고서

■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모금·접수 기간의 제한 기준 (제2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모금·접수 제한 기준은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 정도 등이 다음의 가중 사유 또는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한 처분 기간이 12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로 한다.

1) 가중 사유

-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 나) 위반행위에 따른 기부금 모금의 운영질서 훼손이 심각한 경우
- 다) 위반행위의 재발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 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나) 위반행위에 따른 기부금 모금의 운영질서 훼손이 경미한 경우
- 다) 위반행위의 재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제한기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법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한 경우	법 제4조제2항제1호	2개월	4개월	8개월
2. 법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적극적으로 권유·독려한 경우		1개월	2개월	4개월
3. 법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무원이 그 직원에게 고향사랑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한 경우		2개월	4개월	8개월
4. 법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무원이 그 직원에게 고향사랑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적극적으로 권유, 독려한 경우		1개월	2개월	4개월
5. 법 제7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개별적인 전화, 서신 또는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기부금을 모금하는 경우	법 제4조제2항제2호	1개월	2개월	4개월
6. 법 제7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호별 방문으로 기부금을 모금하는 경우		2개월	4개월	6개월
7. 법 제7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향우회, 동창회 등 사적인 모임에 참석·방문하여 적극적으로 기부를 권유·독려하여 모금하는 경우		2개월	4개월	6개월
8. 법 제7조제1항제4호 및 이 시행령 제3조제2항을 위반하여 모금하는 경우		1개월	2개월	4개월

■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모집·운용 등 필요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 비율(제9조제2항 관련)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	모집과 운용 등 필요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 비율	비고
1. 10억원 이하	100분의 15 이하	
2.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100분의 13 이하	
3.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00분의 12 이하	
4. 200억원 초과	100분의 10 이하	

■ 000지방자치단체 답례품의 종류 및 현황표

(해당 지방자치단체 답례품 정보를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작성하여 기부자가 열람, 선택 정보 제공)

- ※ 답례품 기본정보 : 품목별, 가격별, 계절별, 지자체 상품인증 특징 등 세부적인 내용 정리 활용
- ※ 답례품 신청방법 : 지방자치단체와 금융기관은 답례품을 신청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등 안내 필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내용을 처리하기 위하여 본인여부 확인(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여부 확인 등의 자료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유의사항

1. 기탁서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지정 금융기관에 기부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기부자가 작성한 개인정보는 답례품의 제공과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기부가 가능한 지역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서 개인정보의 내용을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탁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3. 답례품은 기부자의 기부금 총액의 30%이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답례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는 기부자가 납부한 금액 일체가 지방자치단체 기금사업으로 사용됩니다.
4. 답례품의 정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별도의 정보자료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전화번호 : 00 - 000 - 0000)
5. 금융기관일 경우에는 기탁서의 서식에 관하여 시행령에 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금융기관의 자체 서식을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지방자치단체는 뒷면에 답례품의 정보를 기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자료를 기부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영수증

(앞 면)

250 mm				
NO. _____ 고향사랑 기부금 영수증원부		NO. _____ 고향사랑 기부금 영수증 금 원정(W) 위의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기부자 성명 : 주소 :		
금 액	금 원정(W)	90mm 취 급 자 인		
발행연월일				
기부자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시·도 ○○시·군·구 장 직인		
100mm		150mm		
		5mm		

(뒷 면)

주 1. 업무담당자는 금액, 발행연월일, 기부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 하여야 합니다. 2. "취급자인"란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날인을 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 영수증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에 따라 발행된 것입니다. *이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만원까지는 그 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공제금액의 100분 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 세 산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 례제한법」 제58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하여 교부하거나 위조·변조하여 사 용한 자는 처벌을 받습니다.
--	---

- 주 1. 이 서식은 표준서식이므로 규격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실정에 맞게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영수증일련번호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발급순에 의하여 연도별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3.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말일 현재로 연간 납부총액에 대한 영수증을 1매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수증 원부의 "금액"칸에는 납부일자별 금액 또는 납부횟수와 금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4. 고향사랑 기부금 영수증을 전자적 형태로 제작하는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 영수증원부의 게재 내용은 전자적으로 기록하여 영수증을 발행·교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 영수증 뒷면의 내용을 앞면에 함께 적을 수 있고 회계책임자의 간인을 생략할 수 있되, 영수증의 위조·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기금 사용명세보고서

1. 지방자치단체명:

2. 공개 대상 기간:

3.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건수 및 금액

		기부건수(건)	총액(원)	비 고
합 계				※ 전년도 기부금액 대비 %
월별	00월	...	...	...
	00월	...	...	...
	...	...	...	...

4. 고향사랑기금 사용내역

목적별 기금사용항목		금 액	구체적 사용내용
사용액			
총 사용액			※ 대상기간 총액 대비 총 사용액 %

5. 기부금의 금융기관 예치명세(금융기관 잔액증명서 : 별첨)

금융기관명	금액(원)	계좌번호	예금주

첨부 : 금융기관 잔액증명서 각 1부

년 월 일

〇〇시·도 〇〇시·군·구 장

직인

유의사항

-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전년도의 내용을 당해연도 2월말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합니다.
- 고향사랑 기부금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기부자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운영하는 제도로써 공개된 자료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법령에 규정한 방법 외의 모금을 강요, 권유·독려해서는 아니 됩니다.
- 서식은 프로그램을 이용한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	
연 락 처	(044) 204 - 3509